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78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8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서영석 · 이병진
조계원 · 박용갑 · 복기왕
임호선 · 이성윤 · 안호영
한병도 · 위성곤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2025년 7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농어촌 일손 지원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및 계절근로자 관리 전문기관 설치 근거 등을 담은 「출입국관리법」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.

이와 관련, 법무부장관이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전문기관은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MOU 체결 지원 또는 계절근로자의 선발·입국·교육·통역·체류·출국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.

그러나, 현재 계절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용·노무관리 및 인권침해 관련 사항들에 대한 업무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고, 브로커 등의 임금 갈취, 인신매매 등 불법행위에

대한 문제로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절근로 프로그램이 계절근로자의 인권과 고용·노무관리에 대한 사항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5 및 제94조제11호의2·제11호의3).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992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5제4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9항 중 “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, 알선 및 채용에”를 “누구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”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0항을 제1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3항(종전의 제10항) 중 “세부기준 및”을 “세부기준, 제6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절차, 제10항에 따른 조사기준 및 절차 및”으로 한다.

3. 계절근로자의 고용·노무관리 및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

4. 계절근로자의 사용자의 인권침해 여부, 근로장소 이탈 여부 및 그 원인, 근로계약 외의 활동 여부, 그 밖에 허가조건의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항

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실태파악, 통계관리, 수급분석, 연구·조사 등

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·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1. 계절근로자의 선발, 알선 그 밖의 채용

2. 계절근로자의 여권 보관, 임금 갈취, 인신매매 등 불법행위

⑩ 법무부장관은 제9항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⑪ 법무부장관은 제10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.

⑫ 제1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94조제11호의2 중 “제19조의5제9항을”을 “제19조의5제9항제1호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의3. 제19조의5제9항제2호를 위반하여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사람

이 법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법률 제20992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5(계절근로 프로그램 등) ① ~ ③ (생략) ④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2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3. (생략) ⑤ (생략) ⑥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·운영할 수 있고, 정보통신망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	법률 제20992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5(계절근로 프로그램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<u>계절근로자의 고용·노무관리 및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</u> 4. <u>계절근로자의 사용자의 인권침해 여부, 근로장소 이탈 여부 및 그 원인, 근로계약 외의 활동 여부, 그 밖에 허가조건의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항</u> 5. (현행 제3호와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.

<후단 신설>

⑦ · ⑧ (생략)

⑨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,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----- .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실태파악, 통계관리, 수급분석, 연구·조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·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⑦ · ⑧ (현행과 같음)

⑨ -----

----누구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-----.

1. 계절근로자의 선발, 알선 그 밖의 채용

2. 계절근로자의 여권 보관, 임금 갈취, 인신매매 등 불법행위

⑩ 법무부장관은 제9항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

<신 설>

<신 설>

⑩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,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, 제7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
제9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11. (생략)

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⑪ 법무부장관은 제10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.

⑫ 제1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⑬ -----

-----세부기
준, 제6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
템 구축·운영절차, 제10항에
따른 조사기준 및 절차 및----

-----.

제94조(벌칙) -----

-----.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11의2. <u>제19조의5제9항을</u> 위반하여 계절근로자의 선발,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 <u><신 설></u> 12. ~ 20. (생략)	11의2. <u>제19조의5제9항 제1호를</u>----- ----- ----- 11의3. <u>제19조의5제9항 제2호를</u> <u>위반하여 계절근로자의 인권을</u> <u>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한</u> <u>사람</u> 12. ~ 20. (현행과 같음)
---	---